

## 표준약관 개정 신·구조문대비표

### 【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】

현 행	개 정(안)
<p>제19조(약관변경 등) ① 상호저축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 간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(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)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. 다만,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호저축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알렸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③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“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</p>	<p>제19조(약관변경 등) ①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,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9조를 준용합니다.</p> <p>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등 관계법령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,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기타 관련 약관을 적용합니다.</p> <p>&lt;현행 제5항에서 이동&gt; &lt;삭 제&gt;</p>

현 행	개 정(안)
<p><u>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.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u></p> <p>④ <u>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,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</u></p> <p>⑤ <u>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등 관계법령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,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기타 관련 약관을 적용합니다.</u></p>	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⑤ &lt;제2항으로 이동&gt;</p>